

학술연구기금 관리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선문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에서 적립된 학술연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학술연구기금은 재단출연금, 외부기관의 기부금, 연구 간접경비 및 기타 교내외 출연기금으로 한다.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.

1. 교수연구실 창업 및 학생창업자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및 대여
2. 선문신기술 창업보육센터 창업사에 대한 투자 및 대여
3. 기타 학교발전과 교수 연구역량 육성을 위한 연구비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등

제4조(기금의 관리) 기금은 본 규정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학술연구기금관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, 운용한다.

1. 금융기관에의 예탁
2. 국가, 지방자치 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
3. 기타 연구기금 증식을 위한 운용
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학술연구기금 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겸임하고 기획처장, 연구정보처장, 사무처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2.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 처리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
3. 이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중요사항

제7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감사) 이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위원회와 업무주관부서는 내부자체평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.

제9조(주관부서) 이 규정에 관련된 사무는 연구정보처에서 관장한다.

제10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<1999.3.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